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0월 1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주영준 자동차조선과장, 강규형 사무관(2110-5635)		

'12년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

- 지경부, '전기차 세제지원 대상' 공통 기준 마련 -

□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**'12.1월 시행을 목표**로 추진 중인 '전기차 세제지원'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발표했음

< 각 부처 세제지원 추진현황 >

부 처	소관 법률	최대 면제금액(만원)
기재부	법률 :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'제④~⑥항' 신설 * 개별소비세 : 공장도價의 5%, 교육세 : 개별소비세의 30%	·개별소비세(200), 교육세(60)
행안부	법률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'제④항' 신설 * 취득세 : 과세표준액(공장도價 + 개별소비세 + 교육세)의 7%	·취득세(140)
국토부	법률 : 도시철도법시행령 [별표2] 비고란 제2호 '타목' 신설 * 공채 매입금액 : 과세표준액의 9%(소형), 12%(중형), 20%(대형)	·공채할인 금액(20) * 매입금액의 최대 200만원 (할인율 10% 적용)

[참고] 전기차 구매시 세금감면價 例

○ 同 공통기준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**'제 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' 결과**에 따라 **지경부에서 운영 중인 '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'***을 **전면 개정한 것임**

* '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'의 제2조제2호 따른 고시

○ 또한 이번에 **마련된 공통기준**은 **저속·고속전기차로 분류**하고, 당초 **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***을 **참조**하여 **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**과 **기술적 세부사항**을 **규정**함

* **연비·기술적사양 검토**(지경부), **저공해차인증**(환경부) **충족**하는지를 **심사하여 지경부가 고시하면 관련세제 지원**

○ 同 **규정**에는 **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**(연비) **기준**은 km(이동거리) / kWh(배터리 용량)으로 **규정**했으며, **기술적 세부사항**은 **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**로는 **'1충전 주행거리'와 '최고속도'**를 **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함**

□ 지식경제부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하여 **'에너지소비효율 기준'**과 **'기술적 세부사항'**을 **국내에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**와 **법 규정을 참조**하여 **초기 기준을 마련함**

○ **(에너지소비효율 기준) 現양산 중인 전기차 연비를 참조하여 설정**

<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>

구분	주요 내용
저속전기차	·도시 주행모드로만 측정하여 현재 시판중인 차종의 크기(경차급)와 연비수준을 감안하여 차종의 크기와 상관없이 5km/kWh이상으로 설정
고속전기차	·도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측정 방식을 통해 경형, 소형, 중형전기차로 구분을 하여 현재 시판중인 차량을 참조하여 5km/kWh이상으로 설정

* 현재 전기차는 도시주행보다는 고속주행 모드로 운행시 연비효율이 적음

○ **(기술적 세부사항) 전기차의 주요성능**이 **배터리와 모터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**

< 기술적 세부사항 >

구분	기준	주요 내용
저속	1충전주행거리	·**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**에 따라 **경형차**의 **1일 평균 이동거리가 26.3km**인 것을 감안하여 **27km 이상으로 설정**
	최고속도	·**'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의2(저속전기차 기준)'**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**시속 60km이하로 설정**
고속	1충전주행거리	·지경부 작년 R&D 성과물인 BlueOn를 기준 **배터리용량에 따라 복합모드 측정시 82km 이상 또는** 도시모드 측정시 92km 이상으로 설정 * 82km = [배터리 용량 : 16.4kWh] × [고시 연비기준 : 5km/kWh]
	최고속도	·**고속도로에 운행이 가능한 車로 법률***을 충족하고 저속전기차와 구분을 위해서 시속 60km이상으로 규정 * 현행 법률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50km이상, 110km이하로 규정

* **저속전기차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**에 따라 **최고속도 60km 미만**이고 **인증절차가 간소화**됨 (총 51종 테스트 중 충돌테스트 등의 28종 면제)

□ 향후 **전기차 기술발달 추이**와 **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** 등을 **고려**하여 **'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'**을 **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**

< 전기차 세제지원 절차 >

업계 신청	▶	위원회 구성	▶	서류 심사	▶	고시 개정	▶	세제 지원
(연비, 기술사항, 저공해자동차인증서 서류 구비)		지경부 (자동차조선과)		위원회 5인 심사(합격여부)		지원대상 차종 고시에 update (자동차조선과)		대상차종 지원 (지자체 등)

[붙임] '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' 전문

참 고 | 전기차 구매시 세금 감면價 例

① 전기차 구매시 세금 감면價 비교 - 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전기차 가격별 구분				
판매가(공장+개별+교육+VAT)		50,000	40,000	30,000	20,000	10,000
공장도價		42,680	34,144	25,608	17,072	8,536
세금 지원액	개별소비세(5%) (교육세 포함)	2,600	2,219	1,665	1,110	555
	취득세(7%)	1,400	1,400	1,400	1,195	598
감면액	공 채(9%) (매도할인 손실액)	200	200	200	154	77
총 감면액		4,200	3,819	3,265	2,459	1,230

* 차 종 : 동급 가솔린차(1,000이상~1,600cc미만)와 크기가 동일한 소형급 기준
공채 매도 할인율(손해율) : 10% 적용(例 : 서울 강남 10.22%)

② 전기차 구매시 세금 감면價 비교 - Ⓑ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전기차 가격별 구분				
판매가(공장+개별+교육+VAT)		58,576	46,860	35,145	23,430	11,715
공장도價		50,000	40,000	30,000	20,000	10,000
세금 지원액	개별소비세(5%) (교육세 포함)	2,600	2,600	1,950	1,300	650
	취득세(7%)	1,400	1,400	1,400	1,400	700
(감면액)	공 채(9%) (매도할인 손실액)	200	200	200	180	90
총 감면액		4,200	4,200	3,550	2,880	1,440

* 차 종 : 동급 가솔린차(1,000이상~1,600cc미만)와 크기가 동일한 소형급 기준
공채 매도 할인율(손해율) : 10% 적용(例 : 서울 강남 10.22%)